

#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ichLinks) 사업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 및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간 협정문」(이하 “협정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문화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 이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이하 “ichLinks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hLinks”란 참여국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회원국”이란 유네스코 회원국을 말한다.
3. “참가 회원국”이란 아·태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동의하여 ichLinks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를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회원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가 집적되고 있거나 집적예정인 기관으로서 공유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회원국에서 추천하고 센터가 심사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정보생산기관단체”란 회원국 내 무형문화유산 관련 전문기관, NGO, 전문가, 보존단체 등을 말한다.
6. “ichLinks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란 원활한 ichLinks를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7. “센터 사무총장”이란 센터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를 말한다.
8. “이사회”란 센터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목표)** ① ichLinks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태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효과적 공유 및 활용
2. 지역 내 체계적인 정보공유 메커니즘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3.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록 활동 촉진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필요성 및 인식 제고
4. 공유정보를 활용한 회원국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역개발

**제4조(사업대상)** ① ichLinks 사업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에 동의하는 아태지역의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대상 회원국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
2. 무형문화유산 공유정보를 수집, 보관,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5조(기본원칙)** ① ichLinks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수행한다.

1. 센터는 협약 및 협정문에 따라 센터와 회원국의 책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 협력기관은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수집, 공유, 활용하는 주체가 되며 센터와 참가 회원국 간의 소통창구가 된다.

3.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정보는 참가 회원국들의 자체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칙은 참가 회원국의 정책 및 제도를 구속하지 않는다.

**제6조(센터의 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ichLinks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ichLinks 시스템 개발 및 보급
3. ichLinks 구축 관련 교육 및 훈련
4. ichLinks 운영협의회 제안사항 처리
5. 협력기관에 대한 각종 지원
6. 공유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② 센터는 협정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2.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도입 관련 사항
3. 회원국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목록 등재 관련 사항

**제7조(회원국의 책무)** ① 아·태지역 회원국은 센터의 ichLinks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센터의 ichLinks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진다.

1. 사업 참여를 위한 센터 요구사항의 준비

2. 센터와 협력할 자국의 협력기관 추천 및 육성
3. ichLinks 사업을 통하여 공유된 정보의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

**제8조(공유정보의 범주)** ichLinks 사업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에 대한 주요설명, 사진, 영상, 음원 등을 포함하는 국가별 무형문화유산 종목 정보
2. 무형문화유산 관련 도서, 논문, 보고서, 자료집 등 학술자료
3. 정부기관, 전문기관, NGO, 전문가 등 무형유산 분야 이해관계자 정보
4. 축제, 공연, 전시, 학술행사 및 뉴스 등 무형문화유산 관련 행사 및 뉴스

## 제2장 계획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ichLinks 운영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협력기관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공유할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확장에 관한 사항
4. 공유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연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센터는 기본계획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협력기관 지원 계획
2. 협력기관 워크숍 개최 계획
3. 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4. 공유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참가 회원국 및 유네스코 관련 기관의 요구 사항

**제11조(심의·의결)** 제9조 및 제10조의 기본계획 및 연간시행계획은 센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자문기구)** ① 센터는 ichLinks 사업 추진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 사무총장이 정한다.

## 제3장 협력기관

**제13조(협력기관의 추천 및 지정)** ① 참가 회원국의 협력기관은 회원국별 1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력기관은 센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동의하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장이 센터 사무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센터 사무총장은 제2항의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협력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참가 회원국에 통보한다.

④ 제2항의 추천과 제3항의 지정은 일(1)년 단위로 하며 세부일정은 센터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4조(협력기관 추천요건)** ① 제13조 제2항의 협력기관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생산,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2.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2호의 인적 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IT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담당 직원이 있을 것

2.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국제업무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제15조(협력기관의 역할)** 협력기관은 정보공유사업의 참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센터와의 소통창구로써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아카이빙, 보급 및 활용

2. 자국 내 정보생산기관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3. ichLinks 시스템을 통한 자국 무형유산 정보의 제공

4. ichLinks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협력기관 및 정보생산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

5. 공유 정보를 활용한 자국 내 무형유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협의회 참여

7. 센터 프로그램 및 활동에의 참여

**제16조(협력기관의 지정해지)** ① 센터 사무총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가 회원국의 지정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센터의 지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지는 ichLinks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참가 회원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협력기관의 해지에 따른 기존 공유정보의 지속활용 여부는 참가 회원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협력기관의 변경)** 협력기관의 지정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협력기관의 기능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참가 회원국의 요청에 있을 때 센터 사무총장은 참가 회원국과 협의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장 ichLinks 운영협의회

**제18조(ichLinks 운영협의회 구성)** ① ichLinks 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각 협력기관 대표 또는 협력기관의 대표가 추천한 자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1. ichLink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2. ichLinks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
3.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응책 강구
4. 협력기관 지정해지를 위한 의견 제출

④ 센터 사무총장은 협의회 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의 세부운영 사항은 센터 사무총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5장 센터의 지원

**제19조(지원개요)** ① 센터는 협력기관의 원활한 참여 및 정보공유 활동을 위하여 협력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의 구입
2. 사업 담당 인력의 고용을 위한 비용
3. IT 인력 교육 제공
4. 무형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동개발

5. 현지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최 지원
  6. 기타 협력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② 센터는 ichLinks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에 센터 사업에의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제20조(워크숍 개최)** 센터는 ichLink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기관 및 정보생산 기관단체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21조(전문가 파견)** 센터 사무총장은 협력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2조(플랫폼 및 콘텐츠의 활용)** 참가 회원국과 협력기관은 ichLinks 및 이를 통해 공유된 콘텐츠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국제적 홍보: 국가별 무형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아태지역 회원국 공동의 공간으로 ichLinks를 활용함으로써 자국 무형유산의 국제적 가시성 제고
2. 무형유산의 문화관광 자원화: 민속 공연, 전시, 축제 개최 등 무형유산 콘텐츠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공동체의 소득 창출 및 자긍심 고취, 전통문화의 전승 및 연행 활성화, 도시재생 소재로 활용
3. 문화다양성 증진: 아태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무형유산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청소년의 인식 증진, 사회적 갈등 예방, 사회통합에 기여
4. 네트워크 활성화: 무형유산 관련 정부기관, NGO, 공동체, 연구자, 활동가 등 이해관계자 간 교류를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개발
5. 기타 회원국 및 협력기관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활용

**제23조(지원배제)** ① 센터의 지원을 받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한 경우
  2. 허위의 방법으로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3. 센터의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 처리하는 경우
- ② 지원의 배제 여부는 센터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 ③ 지원배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적

용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라 센터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센터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